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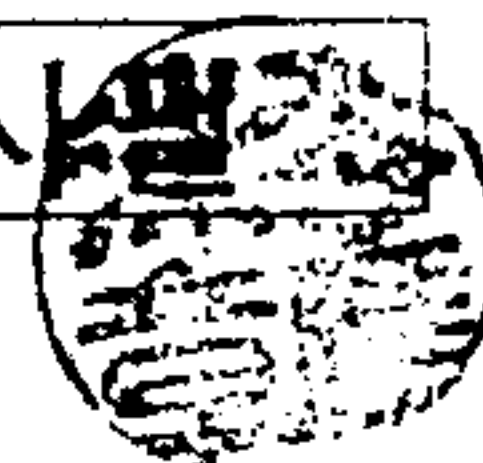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13 호
의 결 년 월 일	1998. 8. 25. (제 75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98 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8. 8. 24.

기획감사실장 심사



'98. 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결정

의안 번호	13
----------	----

제출년월일 : 1998. 8. 24.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1.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이유

'98년도 제1기분 농지세의 중간예납을 앞두고 작물별 필요경비율을 조사하여
농지세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2. 조정내용

○ '98. 7. 23일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지세의 필요경비율은 지방
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득한후 적용토록 개정 되었음.

※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적용

○ '98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 합동작업 실시

- 일 시 : 1998. 7. 22

- 장 소 : 충북도청 세정과

- 대 상 : 각시.군 농지세 담당자

○ '98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조정 통보 (충청북도 98. 7.27)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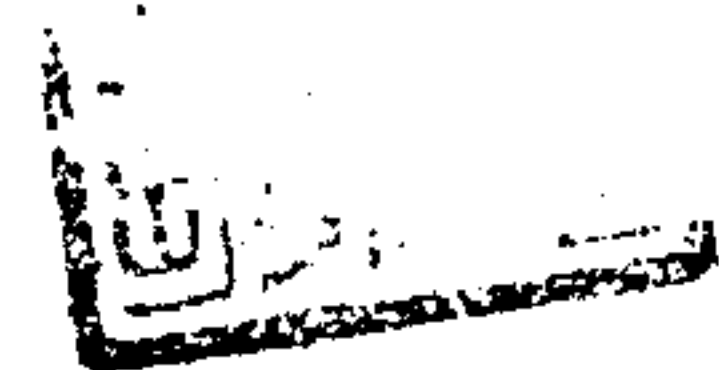
3.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208조, 동법시행령 제159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첨 부 1.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자료

2. 기타참고자료(근거법령, 지침등)

농지세 필요경비를 조정자료.

('98. 제 1 기분)



충 청 북 도

'98. 제1기 농지세 작물별 필요경비(을) 조정자료

【10a 기준】

(단위 : 원)

작물명	수입금액 (A)	필요경비 (B)	소득금액 (C)	비율 B/A C/A		97 경비율	비고
양근	905,200	676,460	228,740	75	25	70	
콩기	1,718,900	1,248,207	470,693	73	27	72	
콩기(하)	3,162,750	2,205,898	956,852	70	30	70	
마늘	1,796,591	1,279,489	517,102	71	29	63	
봄배추	797,683	571,543	226,140	72	28	69	
스팸	1,454,129	972,329	481,800	67	33	75	
순박(하)	2,075,675	1,509,613	566,063	73	27	71	
오이	2,217,000	1,569,800	647,200	71	29	69	
오이(하)	2,130,130	1,557,985	572,145	73	27	71	
황옥	1,583,533	1,227,833	355,700	78	22	72	
황옥(하)	2,020,600	1,655,450	365,150	82	18	80	
토마토(하)	3,104,733	2,252,473	852,260	73	27	70	
파	1,139,017	821,740	317,277	72	28	68	
봄송이버섯	1,553,520	1,121,010	432,510	72	28	72	
상추	1,245,867	943,603	302,263	76	24	71	
상추(하)	1,584,600	1,128,733	455,867	71	29	70	
고추(하)	1,198,800	875,000	323,800	73	27	-	
호박	666,000	517,875	148,125	78	22	70	
호박(하)	1,657,500	1,174,400	483,100	71	29	70	
포도(하)	7,650,000	5,421,400	2,228,600	71	29	69	
블루베리(하)	532,500	494,400	38,100	93	7	68	
망고(하)	7,960,000	6,120,100	1,839,900	77	23	78	
가지	2,000,000	1,579,000	421,000	79	21	-	
쪽갓(하)	1,474,000	1,068,800	405,200	73	27	-	
차트	864,000	641,500	222,500	74	26	80	

※ 작물별 필요경비 조서 : 별 송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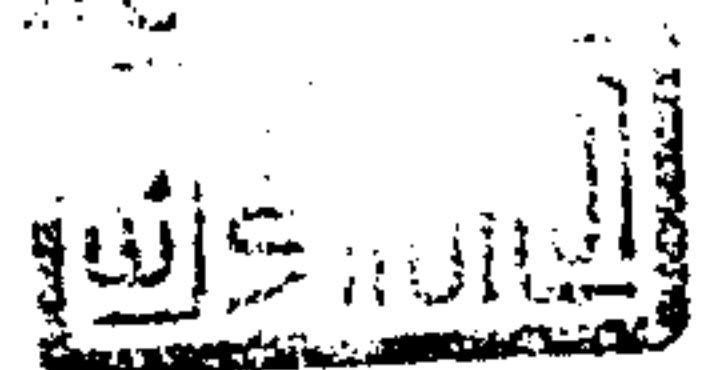
작물명	수입금액(A)			필요경비(B)										비율			
	수확량	단가	금액	개	인건비	종가내	비료내	농약내	시설비	농기구 구입비	공과금	채재료 비	수리비	지분 용임비	임대료	관개비	비율 C/A
벼	2,920	310	905,200	676,450	270,000	18,000	66,469	12,000	-	15,000	130,000	-	50,000	25,000	90,000	-	19/A
밀	1,270	1,357	1,718,900	1,248,207	552,667	224,933	169,167	35,707	150,000	55,000	80,000	136,100	-	-	92,500	-	75
감(II)	1,879	1,683	3,162,750	2,205,898	1,107,500	160,000	198,910	56,163	276,667	29,500	28,333	139,625	20,000	100,000	130,000	317,400	70
복숭아	241	7,455	1,796,591	1,279,489	515,682	5,254,450	96,580	26,536	20,000	19,143	42,900	31,000	20,000	-	84,167	8,600	71
복숭아	4,167	192	797,683	571,543	330,000	23,250	64,593	28,350	-	9,300	22,417	59,267	10,000	-	92,500	10,250	72
수박	2,006	697	1,404,129	972,329	476,857	74,286	101,803	87,097	35,000	51,667	37,500	63,000	21,250	22,500	90,714	491,800	67
수박(II)	3,165	659	2,075,675	1,509,613	535,625	96,250	151,013	40,100	280,000	19,500	27,657	187,250	44,500	100,000	90,000	159,250	73
오이	3,633	810	2,217,000	1,469,800	790,000	86,667	114,133	106,000	-	10,000	-	594,500	-	-	105,000	-	71
오이(II)	3,680	593	2,130,130	1,557,985	601,250	78,433	79,902	53,250	339,300	19,800	21,250	164,417	40,250	88,333	64,000	242,200	72
감	2,270	713	1,593,533	1,227,833	711,000	69,500	95,000	53,333	600,000	67,500	50,000	164,000	-	-	40,000	25,000	78
감(II)	2,270	890	2,090,600	1,635,450	493,250	49,250	82,700	114,000	600,000	100,000	50,000	132,000	59,250	100,000	65,000	235,000	82
복숭아(II)	3,692	842	3,104,733	2,252,473	939,593	97,667	159,657	96,467	368,200	58,000	47,500	280,417	27,833	100,000	130,000	259,433	73
복숭아	2,767	412	1,139,017	821,740	451,667	30,950	65,157	35,133	238,500	9,333	3,000	22,500	5,000	-	96,667	12,500	72
복숭아	1,338	1,160	1,553,570	1,121,010	666,000	-	167,390	101,120	-	12,200	62,600	97,700	13,333	10,000	-	20,000	72
감	2,382	523	1,245,967	943,603	553,333	55,833	72,937	18,750	100,000	-	15,000	242,000	100,000	-	-	48,000	76
감(II)	2,390	680	1,584,100	1,128,733	370,000	30,667	62,000	43,300	324,367	20,000	31,500	278,500	-	-	-	20,000	71
고추(II)	180	6,660	1,198,800	875,000	320,000	55,000	100,000	150,000	100,000	20,000	50,000	50,000	10,000	-	-	20,000	73
호박	3,250	205	666,000	517,875	267,500	51,250	35,550	15,250	-	13,500	23,333	96,575	-	-	45,000	20,000	78
호박(II)	3,315	500	1,657,500	1,174,400	285,000	60,000	59,200	33,200	238,500	44,000	20,000	414,500	-	-	-	20,000	71
포도(II)	1,700	4,500	7,650,000	5,421,400	780,000	-	247,850	125,000	880,000	47,500	150,000	636,050	-	-	-	2,584,000	71
복숭아(II)	3,750	142	532,500	494,400	254,000	40,000	51,400	27,000	-	8,000	10,000	16,000	-	-	80,000	-	93
복숭아(II)	6,500	1,225	7,960,000	6,120,100	1,355,000	330,000	265,600	115,000	1,140,000	52,000	130,000	792,500	50,000	-	60,000	1,895,000	77
기타	4,000	500	2,000,000	1,579,000	600,000	56,000	47,000	161,000	-	-	-	615,000	-	-	100,000	-	79
숙주(II)	2,680	550	1,474,000	1,068,800	315,000	60,000	65,100	33,200	238,500	12,000	20,000	305,000	-	-	-	20,000	73
기타	2,400	360	864,000	641,500	385,000	-	172,500	55,000	-	9,000	20,000	-	-	-	-	-	74

관계법령 부분 발췌

☐ 지방세법 제208조 (필요경비의 계산)

- ① 능지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당해 과세기간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과세기간 전의 필요경비로 본다.
-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그 계산방법, 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 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 ②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정한 작물별필요경비(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능지관리 등에 소요된 평균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관상수등 작물별 필요경비를 정하기가 곤란한 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수 있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농지등급결정 등)

- ① 령 제1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수확량에 해당하는 농지등급별 수확량이 없는 때에는 그 수확량의 직근하위 농지등급의 기준수확량에 의하여 농지등급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기준수확량은 평년작의 경우에 생산되는 1제곱미터당 데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③ 시장, 군수는 농지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지독변경 등으로 새로이 과세 지르 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농지의 등급에 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 또는 수정할수 있다.
- ④ 시장,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9호의2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등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98.7.23 개정)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 ① 시장, 군수는 령제159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들별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품종과 수령에 따라 정할수 있다.
- ② 시장·군수는 천재, 지변 또는 병충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들별 평균필요경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별로 따로 필요경비를 조사 결정할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8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접수번호	5812
구분	123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중정북도

우 360-765 충북 청주시 문화동 89 / ☎(0431)220-2923/팩2923 /전송220-2319
세정과장 신 만 섭 / 세무지도계장 김 승 진 / 담당자 배 덕 기

문서번호 세정 13430- 151

시행일자 1998. 7. 14

(경 유)

수 신 덕 (01 - 12)

출 조 세정(재무)과장

성명	부승수	지시	
직위	세정	결	과장
수번호	13430	제	계장
처리과	재무과	공	
담당자	이승길	합	

제 목 '98 제1기 농지세 필요경비 조정자료 통보

'98 제1기 농지세 중간예납을 앞두고 작별별 필요경비의 시·군 조정자료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본 조정자료를 참고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4조 4항 및 제88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농지세 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지세의 중간예납은 농지소득을 얻은 납세의무자의 소득금액 신고에 의하여 고지발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군별로 결정된 필요경비(율)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금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과세하고
2. 시군 또는 읍면간 철저한 과세자료 등·수보 소득금액 합산에 있어 소득금액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3. 특히 과세대상 농작물 경작 농가에 대한 과세자료(수확량등)조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농협등을 통한 농작물 계통출하의 경우 수입금액을 사전에 확보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붙 임 '98 제1기 농지세 작별별 필요경비 조정자료 1부, 등.

중정북도

전결 내무국장 박 만

